

# 증권



## 국내근재

원본

### ■ 기본사항

계약번호	F-2023-0959283		계약일자	2023.09.13		전계약번호	
보험기간	2023.03.22 24:00 부터 2024.03.31 24:00 까지						
계약자	계약자	(주)시코에프에이 (119-86-31631)					
	주소	(085-89)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, 810 811					
	연락처	02-6263-0033	E-mail				
조정계수업체	조정계수업체	(주)시코에프에이(119-86-31631)					
피보험자	피보험자	(주)시코에프에이(119-86-31631)					
총보험료	440,600원	납입방법	일시납	납입보험료	440,600원		

### ■ 보장사항

보장명	보장조건			
사용자배상	1인당 보상한도액	WON 200,000,000	1사고당 보상한도액	WON 300,000,000

### ◆ 보장대상1

사업장명	삼성전자로지텍 이천 신창고 자동화 설비 도입_제어부 (사외용역)
사업장 소재지	(174-03) 경기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산29-1번지
사업종류	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
연간임금/노무비	WON 108,800,000

### ■ 가입약관

1.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(국내근재)	2.사용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
3.날짜인식오류 보장제외 추가약관	

### ■ WORDING / 특기사항

(주)시코에프에이 공사노무비로 (주)시코에프에이 근로자 사고시 보상※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체의 근로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
### ■ 보험가입 유의사항 (공통)

이 상품에 대한 최저보험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증권당 20,000원 으로 합니다.

### ■ 예금자 보호안내
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)
- 위 내용은 예금자 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험 안내책자등을 참조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■ 기타

-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
  - 전화 : 1332 - 인터넷 : www.fss.or.kr
- 사고접수,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
  - 전화 : 1588-5656 - 인터넷 : www.hi.co.kr

※본 계약서류는 관계 법령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

남울산AM지점 보험모집자명 : (주)울산종합보험에이전시 박용주(454651)  
 ☎ 052 - 273 - 7676 FAX 0507 - 772 - 6560  
 H.P 010 - 3830 - 0010  
 콜센터 1588-5656  
 www.hi.co.kr

대한민국정부  
 인치세 100원  
 종로세무서장  
 후남승인  
 2008년 7호

자필서명

**H 현대해상화재보험**

대표이사 조용일 · 이성재



## 계약서류제공확인서

Hicar | HiLife

##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귀중

계 약 자 : (주)시코에프에이  
계약번호 : F20230959283  
상 품 명 : 국내근재  
보험기간 : 2023 년 03 월 22 일부터 2024 년 03 월 31 일까지  
계 약 일 : 2023 년 09 월 13 일

본 업체(본인)는 상기 계약에 대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계약서류의 제공의무)와 동법 시행령 제22조(계약서류의 제공)와 관련하여 아래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청약서  
나. 약관  
다. 설명서 및 핵심설명서(전문금융소비자 제외)  
라. 보험증권

## 전문금융소비자란?

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보험업법 제2조(정의),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(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)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1~4조의2(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)에서 정한 국가, 한국은행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, 주권상장법인, 지방자치단체, 단체보험 계약자, 기업성보험 계약자 등을 말합니다.

확 인 일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계 약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/서명)

